

[일련번호 : 24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병가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■■■■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■■■■과는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제7조의5(병가)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(행안부예규 제293호)에 따르면,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,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■■■■과는 아래 표와 같이 누계 6일 이상 되는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였다.

[표] 병가 사용 부적정 내역

연번	병가사용자	병가사용일시	병가일수	병가사유	부적정 내역
1		20**-**-**	2시간		진단서 미첨부
		20**-**-**	5일		
		20**-**-**	7일		
		20**-**-**	4시간30분		-
		20**-**-**	5일		-
		누계	17일6시간30분		
2		20**-**-**	4시간		진단서 미첨부
		20**-**-**	4시간		
		20**-**-**	1일		
		20**-**-**	5일		진단서 첨부
		20**-**-**	1일		
		20**-**-**	3일		
		누계	11일		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병가 사용 및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

(주의)